인사말 greeting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발한 6대 괴산군의회는 군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의회, 지역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 바른 사회,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한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루어진 알찬 의정활동 성과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여러 모습을 담아 2011 괴산의정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괴산군의회의 활동모습을 보시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괴산군의회에 바라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우리 괴산군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괴산-음성간 37번 국도 확·포장사업을 확정하는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 활발하게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괴산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경기가 활기를 찾아가고 희망이 샘솟는 미래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모아 괴산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이 총결집하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괴산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군민 여러분과 괴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장 지 백 만

CONTENTS

2010년 의정성과 | 03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 0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16
행정사무감사 | 23
특별위원회 활동 | 34
건의문 · 결의문 | 36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38

"생산적인 의정, 연구노력하는 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2010년 의정성과

내실 있는 회기 운영

- 회기운영 : 10회 74일(정례회 2/31, 임시회 8/43)
- 업무보고청취(2회), 군정질문(1회/37건), 행정사무감사(1회/44건),결산승인(1회)
  예산안 심사(4회)
- 안건처리 : 55건(의원발의 8, 괴산군수 제출 47)
- 의원정례간담회 : 19회 83건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10. 4. 13~ 16, '10.10.12~15) : 86개소
- 환경보전특위('10. 9. 7~ 10) : 35개소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운영

건 명	일 시	참여인원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초청간담회	'10. 09. 16	34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따른 간담회	'10. 09. 29	29명
농업관련 조합 및 단체 초청간담회	'10. 11. 09	27명

결의문 및 성명서 채택

-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 촉구 결의문('10. 9. 16)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행위에 대한 성명서('10. 11. 30)

의원연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의원 해외연수(인도, '10. 1. 6 ~ 1. 10)
- 의정실무 연찬회(부산, '10. 7.14 ~ 7. 16)
- 타시군우수축제 견학
  - 제10회 청양고추 · 구기자축제('10. 9. 3)
  -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10. 10. 6)

회기운영 현황 (2010. 1. 1 ~ 2010. 12. 31)

- 개회횟수 : 연 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 회의일수 : 연 74일(정례회 31일, 임시회 43일)

회 기 별	개 회 일	폐 회 일	회 기 일 수
제183회 임시회	2010. 1. 27	2010. 2. 2	7일
제184회 임시회	2010. 3. 24	2010. 3. 29	6일
제185회 임시회	2010. 4. 13	2010. 4. 19	7일
제186회 임시회	2010. 6. 29	2010. 6. 29	1일
제187회 임시회	2010. 7. 7	2010. 7. 8	2일
제188회 임시회	2010. 7. 23	2010. 7. 28	6일
제189회 정례회	2010. 9. 7	2010. 9. 16	10일
제190회 임시회	2010.10. 12	2010.10. 19	8일
제191회 임시회	2010.11. 11	2010.11. 16	6일
제192회 정례회	2010.11. 26	2010.12. 16	21일

안건처리 현황 (제183회 ~ 제192회)

구 분		발의 · 제출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계	의 원	군 수	원 안	수 정	채 택		
계		55	8	47	47	4	4	-	-
조례	소 계	36	6	30	35	-	-	-	-
	제 정	12	4	8	12	-	-	-	-
	개 정	21	1	20	20	1	-	-	-
	폐 정	3	1	2	3	-	-	-	-
기타	예 산 안	8	-	8	5	3	-	-	-
	승 인 안	2	-	2	2	-	-	-	-
	동 의 안	-	-	-	-	-	-	-	-
	건(결)의안	1	1	-	1	-	-	-	-
	기 타	8	1	7	4	-	4	-	-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제183회 임시회 (2010. 1. 27~2. 2 / 7일간)

⊙ 괴산군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괴산군내 아동 ·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괴산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의 차량을 종전과 같이 화물차세율을 적용토록 과세특례조항 신설.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세조항 신설.

⊙ 괴산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농지법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원의 정수) 등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2009. 11. 1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제 · 개정된 「괴산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군수, 부위원장 부군수, 그 밖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사항 조사 ·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위촉.

⊙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차고지 확보 면제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1톤미만) 운송사업자

⊙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괴산군이 주관하는 축제 · 공연 · 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사항 추가.
-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 공연 ·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제184회 임시회 (2010. 3. 24~3. 29 / 6일간)

⊙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애인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사전점검을 위하여 사전점검 요원 구성 및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함.
- 대상자 선정은 전산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납기내 납부자중 납부인원, 납부금액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함.
- 지원은 교통상해보험가입, 괴산사랑 상품권지급등으로 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증	감	
총 계	273,661,184	-	-	273,661,184
일반회계	248,165,408	-	-	248,165,408
특별회계	25,495,776	-	-	25,495,776

⊙ 괴산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례 제1959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

⊙ 괴산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 · 시행)으로 기존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증업원분" 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목 변경을 하기 위함.

⊙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수료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수료 명칭 변경 : 공장 입지 지정 승인 ⇒ 공장 입지 기준 확인
- 각종 개별법에서 정한 수수료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한 수수료 신설

수수료명	기준	금액(원)	수수료명	기준	금액(원)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석유판매업 등록	1건	60,000
영화업 신고	1건	20,000	석유판매업 신고	1건	30,000
영화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	1건	60,00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일반판매소)등록	1건	30,000
비디오물제작법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 괴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괴산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행락객의 자연감소와 위탁관리기피 및 주민과 행락객들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군 이미지의 훼손 등 정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폐지함에 따라 괴산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의 필요성이 상실됨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함.

⊙ 괴산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근거법인 "수도법"의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과 용어등을 쉬운 말로 정리해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010년 의정성과 |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행정사무감사 | 특별위원회 활동 | 건의문 · 결의문

제185회 임시회 (2010. 4. 13~4. 19 / 7일간)

⊙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추가세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국토의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함.

⊙ 괴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공포, 2009. 7. 2.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제작비용에 관한 규정)를 명시하고 「괴산군새주소위원회」를 「괴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려는 것임.

⊙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괴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186회 임시회 (2010. 6. 29 / 1일간)

⊙ 2010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 괴산군 장류식품공장 신축

(단위 : 천원)

구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증감(변경)사유	비고
건물	8,902,987	11,933,098	증 3,030,111	장류생산제조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 금액 변경	

⊙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괴산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 구성.
-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제188회 임시회 (2010. 7. 23~7. 28/6일간)

⊙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촉탁을 받아 다른 시 · 군의 체납세금을 징수하 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설.
- 징수촉탁에 따라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제189회 정례회 (2010. 9. 7~9. 16/10일간)

⊙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 세입결산액 : 369,670백만원
  - 세출결산액 : 281,687백만원
  - 세계잉여금 : 87,983백만원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예비비 지출액 : 84,965,000원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증	감	
총 계	297,783,151	-	-	297,783,151
일반회계	271,491,876	-	-	271,491,876
특별회계	26,291,275	-	-	26,291,275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 치 금	기본경비	기타지출
합 계	5,016,635	255,973	4,755,366	3,238	2,02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32,636	7,900	324,736		
사회복지기금	3,397,445	53,080	3,344,365		
재난관리기금	502,779	189,836	311,836		1,10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44,630	3,590	337,772	3,238	
식품진흥기금	130,975		130,054		92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08,170	1,567	306,603		

⊙ 괴산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안

- 포상의 종류 및 포상권자를 규정함.
- 포상의 종류에 따른 수여 대상을 종류별로 규정함.
-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2-3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제1종지구단위계획(학생중앙군사학교 영외숙소)사업에 따라, 기 결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제척되는 부분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인근 하천(성황천)과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량의 녹지를 확보하고자 함.

제190회 임시회 (2010. 10. 12~10. 19 / 8일간)

⊙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 괴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청천면 운교리 산1번지외 466필지가 행정구역상 청천면 운교리로 되어 있으나 생활권이 사기막리로 해당 지번을 사기막리로 편입하고자 함.

⊙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운교리 2반 일부를 사기막리 1~3반으로 편입.

⊙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 · 수탁기간 조정
  - 3년 이내 ⇒ 5년 이내
- 수탁자 선정 방법 개정
  - 위 · 수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위 · 수탁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 위 · 수탁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

⊙ 괴산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괴산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과 · 직속기관 · 사업소 조정
  - 이관(2과)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축산유통과 ⇒ 본청
  - 분리(1과) : 산림환경과 ⇒ 산림과
  - 직속기관의 과 신설 : 농업기술센터 ⇒ 연구개발과
  - 명칭변경(2과 1사업소) : 개발촉진과 ⇒ 지역개발실
    : 건설재난관리과 ⇒ 건설교통과
    : 상하수도사업소 ⇒ 환경수도사업소
  - 직제순 조정 : 기획감사실 ⇒ 지역개발실 ⇒ 행정과 ⇒ 친환경농업과 ⇒ 농축산유통과 ⇒ 산림과 ⇒ 경제과 ⇒ 재무과 ⇒ 주민복지과 ⇒ 문화관광과 ⇒ 민원과 ⇒ 건설교통과
- 담당 조정
  - 신 설(8담당)
    : 지역개발실 ⇒ 도시계획담당 : 농축산유통과 ⇒ 내수면어업담당
    : 산림과 ⇒ 산림경영담당 : 경제과 ⇒ 일자리창출담당
    : 문화관광과 ⇒ 시설관리담당 : 민원과 ⇒ 지적정보담당
    : 연구개발과 ⇒ 자원개발담당 : 괴산읍 ⇒ 도시개발담당
  - 폐 지(3담당)
    :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마을가꾸기담당 : 기술지원과 연구개발담당
  - 통 합(8담당 ⇒ 4담당)
    : 농축산유통과 농산물유통가공담당 + 농축산브랜드담당 ⇒ 농산물유통가공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부과담당 ⇒ 세정담당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 관광개발담당 ⇒ 관광담당
    : 환경수도사업소 운영담당 + 상수도담당 ⇒ 상수도담당
  - 이 관(7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화작목연구담당 ⇒ 연구개발과 특화작목연구담당
    : 민원과 교통담당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민원과 위생담당 ⇒ 주민복지과 위생담당
    : 건설재난관리과 농촌개발담당 ⇒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담당
    : 산림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환경자원담당
    ⇒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환경자원담당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친환경농업과, 농축산유통과의 본청이관에 따라 일반직 · 지도직 정원을 개정함.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구분	현 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00	600						600	600					
일반직 계	452	452						451						
• 4급	1	1						1	1					
• 4~5급	3	2		1				3	2		1			
• 5급	26	8	3	3	1	1	10	25	10	3	0	1	1	10
• 6급이하 계	422	422						422	422					
지도직 계	28	28						29	29					
• 지도관	1			1				2			2			
• 지도직	27	27						27	27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1년 ~ 2014년)

-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젼 · 목적 ·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개별보건사업계획(맞춤형방문보건사업등 16개 개별사업)
  -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제191회 임시회 (2010. 11. 11~11. 16/6일간)

⊙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일부내용 조정.
  - 수당지급 상향조정(매월 2만원 ⇒ 매월 5만원)
  - 사망위로금 상향조정(15만원 ⇒ 20만원)
-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을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1개월 이상"으로 확대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자녀 출생가정 지원 신설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 셋째아이 이상 가구 지원 신설

제192회 정례회 (2010. 11. 26~12. 16/21일간)

⊙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당초 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증	감	
총규모	254,207,244	390,300	390,300	254,207,244
일반회계	227,609,709	390,300	390,300	227,609,709
특별회계	26,597,535	-	-	26,597,535

2010년 의정성과 |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행정사무감사 | 특별위원회 활동 | 건의문 · 결의문

⊙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고유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합 계	5,155,606	253,456	4,902,15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5,553	10,700	394,853
사회복지기금	314,663	4,080	310,583
재난관리기금	3,437,004	56,200	3,380,804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14,536	176,000	338,536
식품진흥기금	346,656	6,476	340,18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37,194		137,194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의결예산액
		증	감	
총규모	300,354,834	-	-	300,354,834
일반회계	272,931,099			272,931,099
특별회계	27,423,735			27,423,735

⊙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청사 사무실 및 회의실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괴산읍 서부리 125번지/건물 3층 1,000㎡
- 군유지 확대 및 집단화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칠성면 사은리 산14번지외 24필지 2,496,868㎡
- 장연초 구)광진분교 매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외 3필지(건물 7동 1,096.38㎡, 토지 4필지 10,691㎡)
-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 ·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괴산읍 서부리 708번지/건물 2층 825㎡

⊙ 괴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 시행에 따라 군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구체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 현행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0.3.31

공포, '11.1.1 시행)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괴산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현행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0.3.31 공포, '11.1.1 시행)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괴산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괴산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3개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0.3 .3 1 공포, '11.1.1 시행)으로 분법되면서, 지방세 감면규정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신규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 및 추가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3,0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 신규 추가 ⇒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 신규 추가 ⇒ 800원
- 기존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규정」중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 공장등록증명수수료 기준 1통 ⇒ 1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서 발급 기준 변경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 칼라발급의 경우

⊙ 충북태양광산업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충북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특구개요
  - 명 칭 :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솔라밸리)
  - 범 위 : 청주 ~ 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
  - 추진주체 : 도 및 7개 시 · 군 공동
    ※ 7개 시 · 군 :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
  - 사업내용 :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신동윤 의원

Q 질문

장연골프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또한 세수증대효과는 어떠한지 ?

A 답변

○ 장연면 오가리에 120만㎡규모로 추진하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세수 증대를 위하여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2007년 3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감사원 감사 등으로 1년간 사업이 지체되었고 민간사업자인 괴산관광개발(주)와 2008년 9월 교환계획을 체결 하였으나, 민간사업자 공모시 탈락한 옥산레저에서 2008년 10월에 민간사업자 선정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군에서 청주지법과 대전고등법원의 1, 2차 행정소송을 승소하기까지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진행되지 못함.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2010년 1월 괴산군의 최종 승소 확정이 통보됨에 따라 괴산관광개발(주)에서는 본격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 됨. 앞으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3년이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임

○ 우리군 주변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면 음성군은 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가 공사 중이고, 충주는 6개소가 운영중이고 2개소가 현재 골프장 조성중에 있고 진천군 또한 4개소가 운영중이고 1개소가 공사 진행중에 있음.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시군은 우리군 뿐 임

○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최초 사업 준공시 총공사비의 10%를 취득세로 징수하며 이 금액 중 30%는 군세로 약 10~20억의 세수가 확보 됨. 또한 매년 재산세로 6억~8억원 정도가 괴산군 수입으로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 됨. 이 금액은 2010년 우리군 당초 재산세 수입예산 17억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연골프장사업도 군 발전을 위한 사업이지만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임. 지난 2~3년간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군민 모두가 호응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음

김병준 의원

Q 질문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 해피콜 운영 계획,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

A 답변

○ 우리군은 전체인구 36,909명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8%(10,331명)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이면서 장애인 3,400여명중 지체장애인은 1,500여명에 이르는 인구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지체장애인 중 절대적인 이동편의를 제공 받아야 할 1급 · 2급 중증 지체장애인은 160여명 정도임

○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인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서 보도높이가 일정해야 하고 버스 전용차로제 운영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의 도로 여건과 예산 형편상 도입이 어려움에 있음. 그리고 장애인 해피콜도 현재 예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장애인연합회의 교통약자와 보호를 위한 이동수단으로서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여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께서 더욱 더 많은 편의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산 실정에 맞춰 리프트 차량 증차 제공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론볼 경기장 건립 의향과 관련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2008년 충청북도 장애인 론볼대회 3위 입상에 따른 론볼 경기장 설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론볼 경기장 건립에는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한 17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군 재정 형편상 전액 군비로 건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국비 또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광희 의원

Q 질문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농산물 활용 · 소비량이 극히 적은 양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래 사업의 기대효과는 ?

A 답변

○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괴산청결고추와 콩, 쌀 등 지역 농 ·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2차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괴산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장류식품산업 육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국내유수의 중견 장류 식품 제조업체를 유치코자 하였으며 2009. 3. 27 (주)진미식품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음. 현재 공장 건축이 금년말 완공될 예정이며 2011년 2월까지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거쳐 2011년 6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 됨

○ 앞으로 진미식품에서는 년차별로 사업을 확충하여 총 5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2011년 60명에서 2015년 이후에는 155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매년 고추 300톤, 콩 130톤, 쌀 250톤 등 30억여원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울어 2013년도에는 진미식품에서 국산전용공장을 신설하여 괴산군에서 생산된 청결고추, 콩, 쌀 등 지역농산물만으로 가공된 지역특화장류브랜드를 생산하여 고추장하면 순창군을 연상하듯이 앞으로 청결고추장하면 진미식품, 괴산군을 연상하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홍관표 의원

Q 질문

괴산군민 장학기금으로 어떠한 장학사업을 하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우리군민의 자녀중 타지역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하였을때 지원하여 괴산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A 답변

○ (재)괴산군민장학회는 1997년 3월 26일 설립 · 운영하여 오다 2007년말 장학기금 13억원으로는 장학사업의 확대 및 지역 명문교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군비 10억원을 출연하고, 후원금 17억원 모금으로 2010년 11월 현재 54억2천7백만원을 조성함

○ 괴산군민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으로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급, 명문대 합격생 장학금 지급, 명문대 합격생 배출 지도교사 격려금 지급, 고등학교 심화학습반 운영, 성적우수자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 사감비 지원, 관내 10개 중학교 전학생에게 EBS TV 방송교재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08년 이후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3명, 경희대 2명, 서울시립대 3명 등 명문대에 11명 배출

○ 장학사업으로 지출된 금액은 2008년에 305,897천원, 2009년도 409,277천원, 2010년도 11월 현재 247,875천원 지원하여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63,049천원 지원함

○ 장학금 지원대상을 관내 고교 출신이 아닌 타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 하였을 때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지지만, 장학회 설립 당시 자녀 교육으로 인한 전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군 존립의 위기를 맞아 이를 해결하고자 군민장학회를 설립 지원하게 된 것으로 현재에도 기본재산 50억원의 년 이자 225,000천원으로는 목적사업을 충당할 수 없어 후원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타지역 고교 출신에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여겨짐

○ 장학기금 100억원이 조성되어도 이자율이 하향 추세에 있어 년 4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장학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소요액도 후원금이 없으면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괴산군민 장학회 군비 출연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 드림

박연섭 의원

Q 질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 상황이나 지원계획은?

A 답변

○ 2010년 괴산시장에 17억, 청천시장에 2005년 9억, 2009년 4억4,000만원, 목도시장에 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이 사실임

○ 이에따라 내년도에 괴산시장에 10억과 청천시장에 4억4,000만원을 투입, 공동판매장을 건축하여 지역 농 ·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할머니 장터(골목 장터)를 내년부터 운영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행정기관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인 조직 운영 및 청결, 서비스 등 상인의식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2009년부터 시행하는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지원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도 19건에 4억9,500만원이던 것이 2009년도는 급증하여 224건에 64억2,900만원이 융자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적어 36건에 10억1,200만원이 융자 되었음

○ 또한 전통시장 소액대출이 24건에 1억1,200만원 햇살론이 20건에 3억8,400만원 등 영세상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 지원은 많이 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보조지원 등의 직접지원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정부에서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정도를 지원하여 주는 수준이며, 우리군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 이자의 3%를 지원하고 있음

장효배 의원

Q 질문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현재 사업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설치후 운영방향은 ?

A 답변

○ 본 사업은 2012년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군인 우리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며 국비 15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7억2천만원, 융자 6억원이 투입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후보지였던 사리면 사담리 598번지에서 현재 시설하고자하는 사리면 방축리 9번지 일원을 두고 많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음

○ 현재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임. 또한 앞으로 해당지역의 지역개발 사업, 농업관련 사업도 적극 검토 지원할 계획임

○ 동 사업이 혐오시설이 아닌 사리면의 축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사리면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리면 주민들이 축산업 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윤남진 의원

Q 질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과 현재까지 사업실적, 관리방법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

A 답변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으로서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사업실적으로는 2007년 3,245가구 9,648회, 2008년 4,302가구 21,551회, 2009년도에는 4,923가구에 대하여 28,999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10월말 현재 4,095가구에 대하여 15,979회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리방법으로는 방문사업 대상자를 방문요구에 따라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하여 방문건강관리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이 지역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음

○ 4가지 관리군 중 신규관리군은 신규 등록가구로 월3회 방문하여 가구의 건강문제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은 고혈압, 당뇨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자, 건강문제가 있고 교육을 매 방문시 필요로 하는 자, 취약가족, 말기암 환자, 장애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 1회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정기관리군은 집중관리 대기자, 증상조절이 되나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자, 병원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1회씩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기역량 지원군은 병원치료 및 자가관리로 증상이 잘 조절되는 자, 재가암환자 등에 대하여 6개월마다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관리방안으로는 만족도 자체조사, 보건정보시스템 전산관리 등을 통한 가구별, 생애주기별에 따른 자기관리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제192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10.11. 30.~ 12. 6.(7일간) 실 · 과 · 사업소 및 소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유사 중복된 위원회 통합 운영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운영협의회(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와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통합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분리 · 운영 되고 있음.
- 유사한 기능이므로 농기계 임대에 관련된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괴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제2항에 의하면 '괴산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상이군경 괴산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괴산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괴산군 지회에 건강교실과 노래교실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 하였음.
-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하겠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미구성

- 괴산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음.
-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시 심의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효율적인 정원책정 기준 마련

- 제183회 본회의(2010.1.28)와 군정질의시 우리군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이 타시군에 비하여 상위직의 분포도가 상당히 낮아 형평성이 떨어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분포도를 상향조정 하여 달라는 질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정원책정기준(기능직공무원) 상향조정.

민방위 대피시설 및 방독면 관리 상태 미흡

- 민방위 사태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피시설이 16개소(공공시설 3개소, 민간시설1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시설은 민간소유 재산으로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며,
- 비상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제독시설 및 소화기 등의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피소가 대부분임.
- 또한, 군청 및 읍면에 보급한 방독면(2,556개)은 유효기간이 안면부는 10년, 정화통은 5년으로 보급현황에 의하면 2002년 이전에 보급한 방독면이 2,176개로 전체 보급량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 기능을 상실한 민방위 대피시설 폐쇄 및 대체시설 지정과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민간소유 시설의 활용방안 강구.
- 비상시 군민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위치, 대피요령 등 계도.
- 비상 대피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대시설 설치가 요망됨.
- 군청 및 읍면에 보급한 방독면의 일제조사로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기능을 상실한 방독면의 폐기 및 신규보급.

군민장학금 장학사업 운영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명문대 입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하고 있으며, (재)괴산군민장학회 임원 일부를 특정학교와 관련된 인사를 기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명문대 입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성적우수 학생순(등급 적용, 학력고사 점수 적용 등)으로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방안 강구.
- (재)괴산군민장학회 임원을 특정 학교와 관련된 인사를 배재하고 폭 넓게 기용 요망.

원어민영어교실 강사의 무자격자 임용

- 원어민영어교실 강사 임용시 일부 무자격자와 한국어 전달 능력 검증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임용.
- 강사 임용시 자격증 취득자를 임용하고 한국어 전달능력 검증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 공유재산 현황 : 16,300건 28,195,264㎡
  - 행정재산 : 15,514건, 24,955,547㎡ - 일반재산 : 786건, 9,778,889㎡
- 2010년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 징수 : 3건 42,000원(괴산읍 동부리 456-61번지 외 2건 4,269㎡)
-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하고 무단점유 및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행정재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불정면 목도리 321-2번지 외 3필지가 일부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으나 변상금 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등 관리에 철저 요망.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홍보효과 미흡

- 괴산군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2010년 3월 괴산읍 대덕리 우리매운탕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조형물 앞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관계로 민물매운탕을 먹거리로 한 향토음식 육성 홍보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주변환경 정비 및 조형물 도색 등 방안 강구로 괴산군 향토음식(매운탕) 육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 요망.

보육시설 원어민 강사 자격증 미취득자 파견

- 2010년 3월부터 괴산어린이집 외 8개소에 보육원생 들에게 다문화의 이해와 영어문화권 경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5명의 원어민 강사를 파견 지원하고 있으나,
-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중 초등영어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1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강사 5명 중 2명을 자격증 미 취득자로 파견.
- 보육시설 파견 강사 중 자격증 미취득자 2명을 자격증 취득자로 파견 및 주기적인 교육(교수법, 발음방법)을 이수하게 하는 등 관리요망.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 괴산군 전체 장애인수가 3,500여명(인구대비 9.7%) 이며, 그 중 지체장애인이 1,700여명(장애인수 대비 48%)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항목 11,873개 중 6,487개가 설치되어 54.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괴산군 공공기관 등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법적기준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목도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통하여 괴산군의 관광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불정면 목도리 목도교 일원에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목도강 수변공원을 조성 하였으나,
-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 등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 구경바위 데크 전면 보수 및 전망대 난간 시멘트를 제거하고 재시공이 요망됨.
- 목도교에서 구경바위까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 설치방안 강구.
- 구경바위 주변 낚시터 안전시설 설치 및 수변공원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목도다리에 조형물 설치.

홍길동산채 활용 미흡

- 역사문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및 수옥정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수옥정관광지내에 설치한 홍길동 산채의 시설 일부가 노후되어 있고, 수옥 정물놀이장 운영 기간동안에만 활용하는 실정임.
-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업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쌍곡쉼터 활용 미흡

-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칠성면 태성리 561-1번지에 1998년도에 건립한 쌍곡쉼터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2010. 5월부터 미 대부)
- 1998년부터 2010년까지(12년간) 사용료 수입은 85,194천원에 비해 건물유지비는 433,517천원으로 건물유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음.
- 현재 사용자가 없고 활용이 미흡한 쌍곡쉼터를 괴산군의 농 · 특산물판매장 등 활용 방안 강구.

괴산고추축제 개최방법 개선

-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청정 농 · 특산물이 어우러진 괴산군의 대표축제인 괴산고추축제가 관주도형으로 개최되고 있어, 획일적, 지시적 운영체제로 축제발전을 위한 창의성이 떨어지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부족과 행사추진시 수동적인 자세 등 효율적인 행사추진이 어려우며
- 방문객들의 체험소재 및 전국 대회로 선정한 임꺽정 활용 미흡.
- 민간주도 법인설립과 축제조례 제정 등 민간주도적으로의 추진방법 방안 강구.
- 고추, 임꺽정캐릭터, 절임배추 등을 활용한 포토존 설치로 방문객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사진 찍을 장소 제공.
- 각종행사시 임꺽정 활용방안 강구.

체육단체 통합운영

- 괴산군의 체육단체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및 행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종목별 임원과 회원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어 각종 대회 유치와 개최시 단체간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효율적인 체육업무 추진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체육인들의 화합 도모를 위하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운영 방안 강구.

산막이 옛길 편의시설 확충

- 갈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산막이 옛길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비학봉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노씨종중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칠성면 사은리 549-6번지 외 4필지) 군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편의시설(현대식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등)의 확충으로 방문객의 불편 해소 방안 강구.
- 주차료 징수시 군에서 기 조성한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아니라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므로 주차료 징수는 장기적으로 검토 요망.

주민자율방역단 관리 · 운영 미흡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마을별 주민자율방역단 279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비 및 방역인력 부족으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약품배정에만 그치지 말고 장비 및 방역인력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도모.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건물 청결상태 불량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신축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흙이 묻어 있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또한 화장실을 어지럽히고 있으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 야기.
- 주기적인 청소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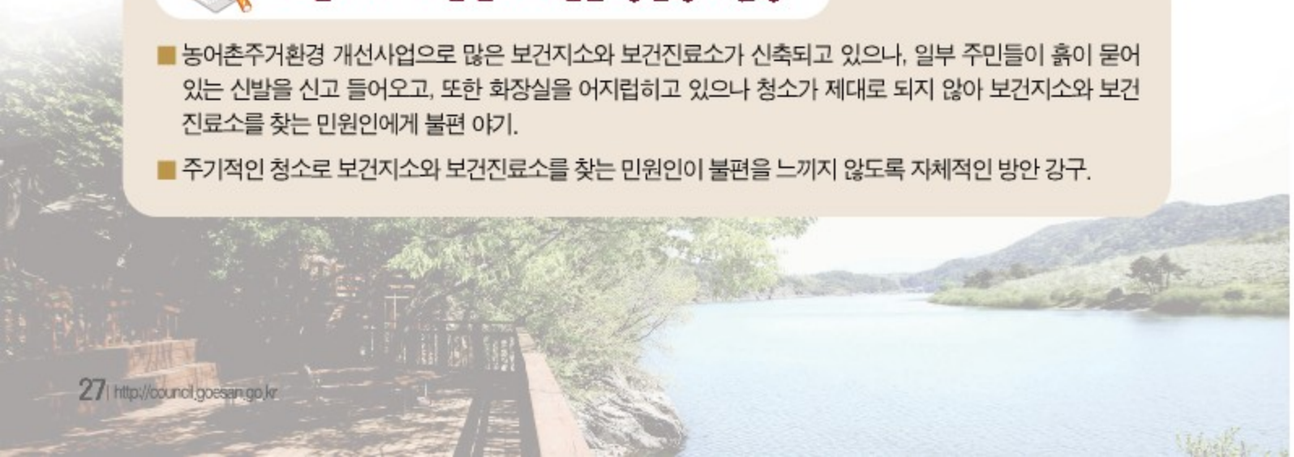

농민들이 산지법 및 농지법을 알지 못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시설 양성화 관련

- 관내 산지 및 농지에 대하여 적법절차 없이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택지, 창고, 농지 등으로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 투기적 개발 등을 빙자한 불법전용은 엄단해야 하지만 농업인등이 생계유지를 위해 상당기간동안 허가없이 전용한 산지 · 농지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관련법에 따라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현행 산지 및 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한 행위에 대하여 괴산군 전체 읍 · 면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조치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담당부서에서는 양성화 및 원상복구에 대해 자세한 안내서를 발송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실시 바람.

괴산군 미설치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현황 관련

- 소방도로가 화재발생 등을 대비한 중요한 기간시설임은 공감하며 관련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민통행이 위험하거나 불편한 곳부터 신속히 착수 · 마무리되어야 할 것임. 또한 1983년부터 실시된 사업이지만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 문제 해결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상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도(道)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고추 비가림시설 예산 반영요구

- 2011년부터 농정분야 국비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던 고추생산기반구축사업 중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는 예산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고추비가림 사업은 예산요구가 없었음. 최근 기후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하여 비가림시설은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비가림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을 검토 바람
- 농업에서 지구환경변화가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과수재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 과수재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떫은감(국비50%, 도비10%, 군비15%, 자담25%)으로 한정되고, 계약조건은 재배면적 1,000㎡이상이거나 가입금액이 3백만원 이상의 과수농가이므로 대상작물의 소규모 재배농가도 수혜를 못받고 있어 군 전체 과수농가 1,002명 중 221명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정임.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 품목과 대상농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소형농기계 확대보급 계획에 대하여

- 농촌은 이농 및 고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노동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농업인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예취기, 관리기, 탈곡기 등)나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의 확대보급이 필요한 실정임.
- 소형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친환경재배단지 냉동탑차에 대하여

-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
- 더불어 괴산군이 지원하는 냉동탑차에 우리군 농 · 특산물을 홍보하는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간접홍보 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있음.
- 군(郡)지원 차량을 통한 간접홍보 실시 검토.

신규사업 추진시 전문가의 검토 강구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농식품 전통식품 육성 지원, 마늘고추장 가공시설 등)이 많은데 향후 신규실시 사업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전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 적합성을 확보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규실시 사업은 전문가의 사전검토 수렴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

농 · 특산물 포장재 계약체결에 대하여

-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금을 개별 작목반에 지원할 때 포장재 지원 업체와 계약체결에 앞서 제반조건(포장재 규격, 재질, 중량, 반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 한 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계약체결시 담당공무원 입회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도시숲조성사업구역 진달래 식재시 사후관리 대책

- 대묘산 주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시행한 괴산읍 동부리 충혼탑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진달래와 산딸나무를 식재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진달래 활착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여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인 보식대책을 세워 식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지 고사목에 대하여 2011년에 하자보식을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식재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 바람.

2009년도 임도신설공사구간 등나무 고사목 대책 강구

- 괴산읍 동부리~대덕리 간 임도신설시 공사구간의 녹화를 위하여 등나무 487주를 식재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사후관리 소홀로 등나무 활착률이 30% 미만으로 저조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보식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식대책을 세워 고사목은 2011년도에 보식한 후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처분시 사업정지 유도 강화

-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징구나 사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주로 내리고 있어 재발의 원인이 됨에 따라 추후 행정처분시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처분시 가급적 사업정지 처분 바람.

에너지절약 추진용 자전거 방치에 대하여

-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출장 시 2km이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에 21대를 구입하여 본청 5대, 보건소 2대, 농업기술센터 3대, 읍 · 면별 1대씩 각 11대를 배부하였으나 일부 운영실태 확인결과 비치된 자전거의 관리가 소홀(대수 불일치, 바퀴 바람 없음 등)하므로 보유실태를 재점검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군청 및 읍 · 면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바람.

시장상인회의 상인교육 등이 저조한 실정

- 괴산군에는 현재 괴산 · 청천 · 목도 상인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상인회의 경우 충북상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인교육이나 워크숍 등에서 제외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추세나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관련 상인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충북상인연합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상인 교육 및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 강구.

산업 · 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속추진 요구

-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사업진행이 다음과 같이 지지 부진한 상황임.
  -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는 투자자 및 건설사와 사업추진 협의 중
  - 첨단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지구지정만 된 상태로 입주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의 중
  - 감물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은 승인받았으나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방안 강구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부과금액 : 69,664천원 - 징수금액 : 37,658천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 부과금액 : 255,428천원 - 징수금액 : 50,304천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 부과금액 : 14,138천원 - 징수금액 : 10,754천원
- 상기 내역과 같이 2009년 1월 ~ 2010년 10월까지 총부과금액 339,230천원, 총징수금액 98,716천원으로 징수실적이 29%에 불과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체납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
- 장기 ·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개시를 검토하고 재산이 없는자 및 행불자는 결손처분조치 바람.

골재허가, 채취현황 및 원상복구 내역에 대하여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06-4번지 일원에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었다가 2010. 09. 02.자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향후 유사 업무추진시에는 허가신청시 사업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보증보험 제출가능 여부 등)하여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유사 사안이 재발하여 주민불편과 사업지 주변지역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저조

-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실시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종류와 수량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농기계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므로 추후 군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도 사업소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임.
  ※ **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 기간 : 2010. 6. 1. ~ 현재 - 기종 및 보유대수 : 29종 47대 - 임대현황 : 14종 75농가 136일
- 농기계구입 종류 · 수량 확대와 보유 농기계 관리 철저 그리고 농민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 현재 농업기술센터 외에 군(郡)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도 사업소를 확대 운영할 것.

괴산 BIO씨감자의 생산 및 보급 저조

- 괴산 BIO씨감자 연구단지 및 생산단지 내 시설중 분무경하우스 1,696㎡, 망실하우스 68,848㎡는 원원종 180천개, 원종 60톤 생산이 가능하므로 괴산군 씨감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규모이나 현재 조직배양, 원원종 및 원종생산의 관리부실로 원원종 120천개, 원종 30톤으로 생산량이 저조한 실정임.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료에 계획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농업연구사 보조인력 부족과 출장비 현실화

- 연구사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무가능한 보조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보조인력의 잦은 교체로 연구 및 생산에 차질을 빚는 실정임.
- 연구사의 경우 업무특성상 출장이 잦아 출장여비 소요가 많지만 지급가능한 출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지속근무 가능한 보조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 업무성격을 반영하여 출장여비가 근무실정에 맞게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

씨감자 채종생산농가 지원 부족

- 씨감자는 바이러스 침투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독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채종생산농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을 위하여 채종생산농가의 농약과 포장재에 대한 전액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배추절임 후 폐소금물 수거 철저

- 기존하우스(1개소 2,000㎡)에 염전을 만들어 수거한 폐소금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표본조사에 의하면 폐소금물 발생량은 연450톤으로 추정되지만 수거량은 338톤에 불과한 실정임.
- 환경보전을 위하여 절임배추생산 후 폐소금물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방안 수립 및 시행을 검토.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처리용량 대책 강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05년 10월 25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22일 준공하고 (주)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탁 받아 위탁운영 중에 있음. 당초 해당 시설은 1일 처리용량 60톤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처리용량이 1일 30톤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당초 계획된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근본원인 규명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현재 30톤에 불과한 처리용량을 계획된 60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시설물 설치를 추진 바람.
- 향후 동종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선정 이후라도 관련 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바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운영 개선요구

- 괴산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야생동물구조단+보호협회)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5월 부터 10월까지 활동하고 있음.
- 우리군의 경우 2010년도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청건수가 30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방지단에 탄약비 500만원, 피복료 350만원을 지원해 주었음. 그러나 피해방지단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야식비,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경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임.
-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 검토 바람.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1994년 지하수법 제정 및 개정시 경과조치 기간 내 허가 ·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지하수이용시설이 불법공 및 방치공으로 남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수립 및 시행 검토 바람.

개인쓰레기 반입처리 및 농업부산물처리 방법

- 절임배추생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개인쓰레기 처리 절차나 농업부산물(과수원 은박지, 영농폐비닐, 농약병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홍보가 미흡하여 농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필요한 조치(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 검토.

특별위원회활동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010. 4. 13 ~ 4. 16, 2010. 10. 12~10. 15 (현지조사활동)

조사대상및방법

- **대상** : 2010년도 주요건설사업장(이월사업 포함)
- **방법** : 현지확인점검

주요점검사항

■■ 미착공 사업장 : 미착공사유 및 준비상황 분석(측량, 설계, 계약 등)

■■ 공사중인 사업장

- 공사 진척상황, 설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 사업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조치상황,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 사항

■■ 완료된 사업장

- 설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사업장 주변 정리실태

조사결과

■■ 국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방재정 조기 집행 활성화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현지점검 시 해당사업부서장의 동행 설명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음.

■■ 금번 집행부의 조기 발주 노력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이 조기 완공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해 매번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등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등의 자료를 관리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장의 공사 설계에 있어, 사업현지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만족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공사 마무리시 더욱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기존 공사구간과 현지상황에 맞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수범사례

| 감물하백양배수로 정비 (감물면) |

▶ 배수로를 경사면으로 하여 생태계보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로 견실시공하였음.

| 2010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가동지구) |

▶ 소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였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010. 9. 7.~9. 10.(현지조사활동)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폐수 · 대기배출 사업장, 오수 · 폐기물처리사업장, 축산폐수배출농가
- **방법** : 현지확인점검

점검사업장 및 업소

계	기업체	세차장	양축시설	오 · 폐수처리업소	기타
35	12	-	23	-	-

조사결과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정화시설 주변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우수 유입 방지 노력이 부족하였음.
- 퇴비사 관리의 소홀로 축산폐수가 주변 수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
- 퇴비사 주변 침출수 방지 노력이 부족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침출수가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음.
- 퇴비사, 정화시설, 축산시설 등의 장소에 적절한 비 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함.

개선의견

- 환경관련시설의 주변 정리정돈 및 노후시설 개 · 보수가 필요함.
- 악취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방지 노력이 미흡함.
-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변정리가 필요하고 축산폐수 관리소홀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 될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점검이 필요함.
- 환경보전의 중요성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함.
- 생균제와 톱밥의 적정량 사용으로 분뇨냄새를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농축산유통과)

건의문 · 결의문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인구감소 ·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력이 부족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엽연초 생산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더욱이 이상기온과 잦은 비로 인해 입고병 등 병충해를 입어 최대의 담배흉작으로 평년 대비 약30 · 40%의 수확량 감소가 예견되고 이로 인해 국내 엽연초 생산농가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농가에서는 미리 지원 받은 농자재 값을 갚을 길이 없어 고민하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농가의 붕괴는 한 농가의 붕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엽연초 생산에 대한 국내 경제 기초가 무너져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파급에 이르게 됩니다.

재해시 국가적인 재해보상 시스템으로 보상을 받는 타 작물과 비교하면 엽연초는 풍해, 수해, 우박 피해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니면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 경작 계약시 수량과 매매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경작농가의 소득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KT&G는 국내 담배농가와의 수매 계약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브라질을 비롯한 값싼 외국 원료에 의존하여 엽연초 생산 농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작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 엽연초생산력의 증진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엽연초 생산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사위기에 처한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생존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엽연초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대책 방안수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 · 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2010. 9. 16.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행위에 대한 -

성 명 서

북한은 우리 국민이 남북평화통일과 공동의 번영을 염원하며 어려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해안포와 곡사포를 이용한 대한민국 영토의 무차별한 포격으로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준 전시명령과 추가적인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번도발은 과거 많은 도발들과는 달리 우리 영토내의 민간인 거주지를 직접 겨냥한 무도한 공격행위로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등을 위반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이자 비인도적 행위이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것은 물론 지난 3월 26일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암함 사태에 대한 책임은커녕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직후 우리나라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극악무도한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사실상 선전 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4만 괴산군민 모두는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절체절명의 안보위기를 맞아 동족에 대한 북한의 반행을 규탄함과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깨뜨리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무력도발 중지와 무고한 인명살상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연평도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사회적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국민은 절체절명의 안보위기를 맞아 의연하고 비장한 자세로 현실을 견지하며, 우리 국민을 교란시키는 분열책동을 경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사태로 순국한 군 장병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관련된 모든 분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010. 11. 30.

괴산군의회의원 일동

제6대 괴산군의회 개원
('10. 07. 07)

의원 선서
('10. 07. 07)

개원 기념식
('10. 07. 07)

운영행정위원회 활동
('10. 07. 2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따른 간담회
('10. 09. 29)

의원정례간담회
('10. 09. 16)

관내 내수면 양식장
현지점검
('10. 08. 18)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초청간담회
('10. 09. 16)

제2회추가경정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10. 09. 15)

이시종 도지사 시 · 군 순회 도정보고회 ('10. 09. 10)

괴산군의회 의원과 군 간부공무원 상견인사회 ('10. 06. 17)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국내연수 ('10. 07. 14)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행위 성명서 발표 ('10. 11. 30)

제10회 청양고추 · 구기자 축제 견학 ('10. 09. 03)

2010제천국제한방 엑스포 견학 ('10. 10. 06)

지백만 의장

의장 당선 ('10. 07. 07)

나눔가득『2010농특산품 한마당』행사(' 10.10.17)

괴산전통시장 아케이트 준공식('10.11.03)

홍관표 부의장

부의장 당선('10.07.07)

관내 내수면 양식장 현지점검('10.08.18)

제3회 신풍한지축제('10.09.17)

신동운 의원

제6대 의원 오리엔테이션('10.06.17)

201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10.07.2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0.10.13)

김병준 의원

2010 칠성면민 한마음축제('10.10.09)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0.10.14)

군정질문('10.11.11)

이광희 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운영('10.07.08)

제11회 목도백중놀이('10.08.20)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0.10.13)

박연섭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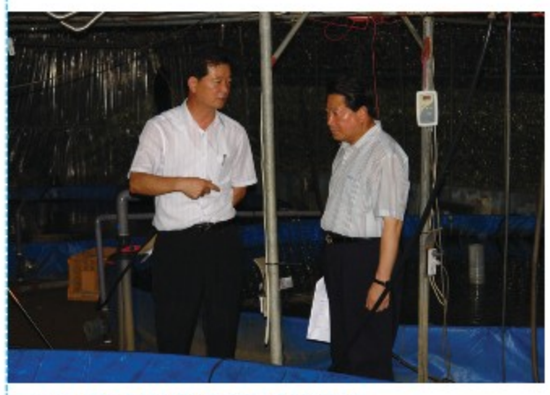

관내 내수면 양식장 현지점검('10.08.1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0.10.14)

푸른내 문화센터 준공식('10.11.19)

장효배 의원

제188회 임시회('10.07.23)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10.09.08)

청안면 한마음축제('10.10.08)

윤남진 의원

201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10.07.2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10.10.13)

전국 단원 김홍도 그림 연구회 회원전('10.10.15)